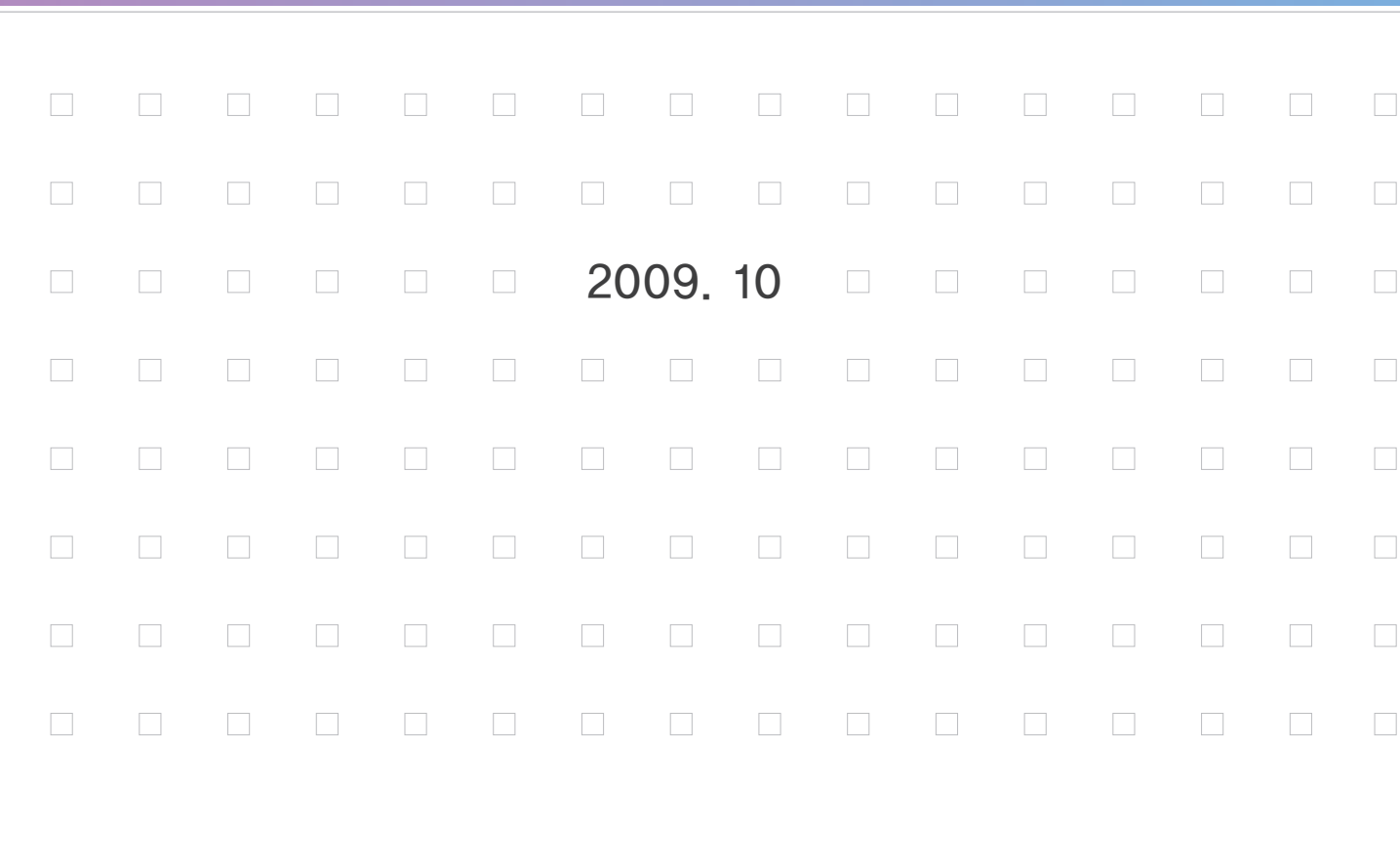




대부업 관리 · 감독 지침



2009. 10

대부업정책협의회

대부업 관리 · 감독 지침

2009. 10

대부업정책협의회

- i -

V. 대부계약의 체결	34
1. 대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교부·설명 의무	34
2. 계약서 보관 및 열람·발급 의무	38
3. 중요사항 자필 기재	40
4. 과잉대부의 금지	42
 VI-1. 이자율의 제한 (공통)	 45
1. 이자율의 최고 상한(공통)	45
2. 선이자 공제시 이자율 산정 기준(공통)	50
3. 간주이자(공통)	52
4. 복리약정(공통)	57
5.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계산(공통)	57
6. 한도거래(공통)	60
7. 이자제한과 계약의 효과(공통)	63
8. 이자제한법과의 관계(공통)	65
9. 계약시점별 이자율의 최고 상한(대부업자)	66
10.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 지급일(공통)	68
 VI-2. 여신금융기관 이자율제한의 사례별 적용	 69
1.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69
2. 간주이자	73
3.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78
4.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카드론)	82
5. 한도거래	83
 VII. 중개의 제한	 85
1.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 금지	85
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85

VIII. 검사, 감독 및 실태조사	87
1. 보고·자료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	87
2. 시·도지사의 검사	88
3. 금융감독원 위탁 검사	89
4.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및 대상	91
5.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92
6. 업무보고서 제출	93
7. 제재	95
8. 행정처분의 관련 시·도지사에게 대한 통보	100
9.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 종결	100
 XI. 대부업자등 협회 가입 및 교육	 102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협회 가입	102
 X.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103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103
2. 적용 대상	103
3. 채권추심자에 대한 금지행위	104
4. 채권추심자의 의무	107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재관련 규정	108
(첨부 1) 대부업법 관련 서식	109
(첨부 2) 대부업법의 제재관련 규정 및 조치기준	124
(첨부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37
(첨부 4)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150

본 지침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상 참고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은 본 지침의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등 목차]

< 참고 >

Ⅱ-1.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및 해석	3
Ⅲ-5. 법제처 법령해석 07-0253(’07.8.17.)	17
Ⅳ-3-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28
Ⅳ-3-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32
Ⅵ-1-①.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06.3.24.)	46
Ⅵ-1-②. 대법원 ’06.10.13, 2006도4837 판결	50
Ⅵ-1-③. 대법원 ’81.1.27, 80다2694 판결	51
Ⅵ-1-④. 원리금균등상환 엑셀함수식	58
Ⅶ-1.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86

< 표 >

Ⅱ-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금융법령	8
Ⅵ-8.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비교	66

< 그림 >

Ⅲ-1. 등록절차의 흐름	10
---------------------	----

< 계산사례 >

VI-1-①. 이자율의 최고상한(1)	48
VI-1-②. 이자율의 최고상한(2)	48
VI-1-③. 선이자 공제시 이자율 산정기준	51
VI-1-④. 간주이자(1)	55
VI-1-⑤. 간주이자(2)	55
VI-1-⑥. 복리약정	57
VI-1-⑦. 원리금균등상환(1)	58
VI-1-⑧. 원리금균등상환(2)	58
VI-1-⑨. 원금균등상환	59
VI-1-⑩. 한도거래	62
VI-1-⑪. 이자제한과 계약의 효과	64
VI-1-⑫.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65
VI-2-①. 간주이자(1)	75
VI-2-②. 간주이자(2)	75
VI-2-③. 간주이자(3)	76
VI-2-④. 간주이자(4)	77
VI-2-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81
VI-2-⑥.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카드론)	82
VI-2-⑦. 여신금융기관의 한도거래(1)	83
VI-2-⑧. 여신금융기관의 한도거래(2)	84

I. 개 요

1. 목 적

이 지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는 “대부업법”, 조문 인용시에는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거래상대방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용된다. 이 지침 내용은 대부업법의 2009년 4월 22일 개정 시행 내용 및 2009년 8월 7일 개정시행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종전법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이 시행('09.8.7)되면서 삭제되고 공정채권추심법 규정이 적용된다.

나. 적용대상별 규정내용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전체와 공정채권추심법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2)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자율 등의 제한’(법 제15조),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법 제11조),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Ⅱ. 대부업등의 등록

1. 등록대상 여부 판단

가.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등’의 개념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 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경우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이 경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참고 II-1]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및 해석

1.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 등을 “업으로”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1) 금전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금전의 금전이자에 상당하는 것(쌀, 상품 등)을 받는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으로 본다.

2) 다만, 주된 사업(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보조수단(마케팅, 금융지원 등)으로써 대부 행위를 병행하되 금전이자를 받지 않는 등, 금전의 대부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

나. ‘동종의 행위’는 대부 또는 대부의 중개를 의미하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의미한다.

다. ‘반복·계속적’으로 할 것. 대부 행위 등을 실제로 ‘반복·계속적’으로 한 경우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부 행위 등을 반복·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로 하는 행위라면 1회의 행위라도 ‘반복·계속적’에 해당한다. 다만 1인에게 1회 금전을 대여하여 이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영리의 목적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반복·계속적’의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직후 6개월 동안 다수의 대부행위(동일 대출이 수차례 연장 또는 갱신된 때에는 1건으로 취급)가 있을 경우

라.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광고 등)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판례 : 서울고법 1972.10.4. 제2특별부판결〉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이란 금전을 대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인 금융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역시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더라도 1인에게 단 1회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같은 행위를 영업세법상의 금융업이라거나 그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 소정의 금융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사항인 바, 금전의 대부 등 또는 중개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2)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받은 대출모집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재경부 유권해석, 보험 41207-323, '02.11.)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해당한다.

3) 다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하는 추심전문업체는 '09.4.22.부터 등록의무 대상이 된다.

가) '09.4.22. 이전에 매입한 채권만 가지고 추심하는 업자도 대부업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나) 대부채권 매입업자가 채권추심 부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양도 받은 자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상사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부칙<9344호, 2009.1.21>

제7조(중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은 대부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상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으로 보아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에 해당하여 등록의무가 발생한다.

☞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사용(법 제5조의2)

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는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경우는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1) 대부업 등(대부업, 대부중개업)과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는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대부(중개) 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예: 주업이 무역회사인 ‘한국상사’가 대부광고에 상호를 쓸 때에는 ‘한국상사대부’ 등으로 표시)

2) 대부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대부업자가 다른 업종과 겸영하는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수익 비율 계산시,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 이익을 금전 대부의 이자수익과 같이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금융업’의 영업수익 정의 등 참조)

나. 대부업자는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서민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므로 대부업자는 물론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유의하여 처리한다.

☞ 위반시 제재 : 은행법 →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표 Ⅱ-2〉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금융법령

법 률 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상호저축 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중에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무진회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아니면 그 상호에 신용카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신용협동 조합법	제3조(명칭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9조(벌칙) ③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8조(벌칙)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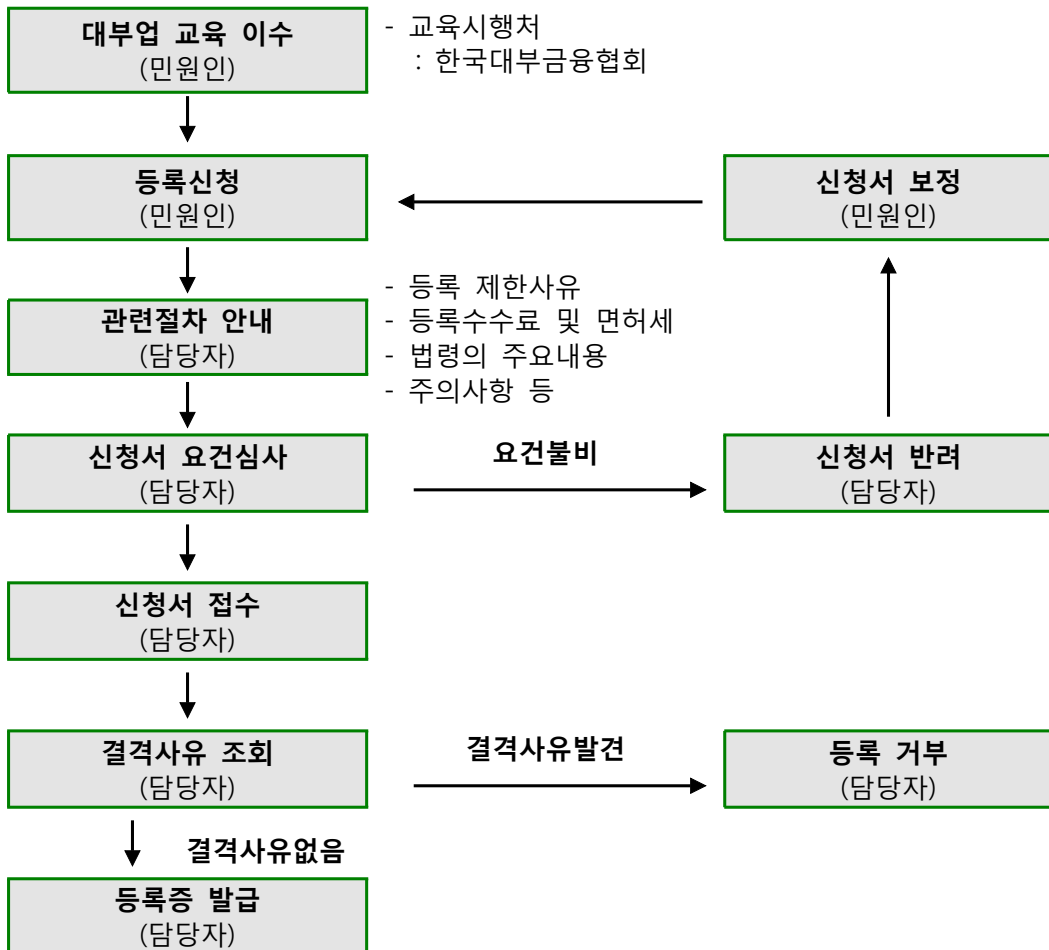
법 률 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보험업법	제8조(상호 또는 명칭) ①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0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법 제38조(상호) ① ~ ⑦ (생략) - 동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①금융투자 ②증권 ③파생, 선물 ④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⑤투자자문 ⑥투자일임 ⑦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령 제42조(상호의 제한) ①~⑦(생략) - 동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①financial investment ②securities ③derivatives 또는 futures ④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 ⑤investment advisory ⑥discretionary investment ⑦trust 이와 같은 외국어 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유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표시를 한 자

Ⅲ. 대부업등의 등록 절차

1. 등록업무 담당기관

가. 등록절차는 민원인(대부업등을 영위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시·도지사의 등록증 발급으로 종료된다.

〈그림 Ⅲ-1〉 등록절차의 흐름



법 제3조(등록 등) ①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등록 신청전에 교육 이수 필요).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 업무가 위임된 경우 피위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한다.

* '09.9월 현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시·군·구청장에게 업무 위임되었음

법 제3조(등록)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을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2. 등록신청서

가. 금융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별지 1호 서식’(법인·개인)을 사용한다.
서식의 기재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1) 표시 또는 광고에 전화번호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표시·광고시에는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등록신청 구분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한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사업 부분에 체크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모두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부분에 모두 체크해서 신청한다.

다. 등록신청인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을 하지 못한다.

3. 등록(등록갱신) 신청의 처리

법 제3조(등록) ③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

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 제3조의2(등록갱신) ①대부업자등이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4조 각 호의 등록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가. 시·도는 등록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 또는 임원(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이 법 제4조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범죄경력조회)과 다른 시·도(행정처분 여부)에 조회한다.

나. 등록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한다.

다. 등록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및 중복상호 여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부에 신청서 기재사항,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며, 민원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 및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 교부후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3) 「 시도행정정보시스템」(시군구는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내 「대부업 등록 관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등록부 기재에 같음한다.

라. 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등록갱신 신청하는 경우도 등록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

1) 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4호 서식’을 사용,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시 확인한다.

2)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 까지 등록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하지 않으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 '05.8.31까지 등록한 업체 : '08.8.31.('05.9.1.부터 기산하여 3년)
⇒ 갱신신청기한 : '08.7.31.
- '05.9.1.(등록갱신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등록한 업체 : 등록일로부터 3년간
(예시) 등록일이 '06.10.20.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09.10.20.이고, 갱신
신청 기간은 '09.7.20. ~ '09.9.20.

4. 대부업등 교육 이수

법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신규 또는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대부업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 후, 등록기관에 등록(또는 등록갱신)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대부업등의 준법사항에 관한 교육은 시·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한다.(법 제18조의7)

1)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등록 및 등록갱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영 제2조의3제3항)

2) 교육 대상은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으로 한다. 이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은 개인업자 또는 법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사용인(지점장, 지배인 등)을 말한다.

3) 다만, ①천재지변, ②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기관에 제출한다.(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5)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영업정지

5. 등록부 공개

법 제3조(등록)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등록부 기재사항 중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청 및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되는 기재사항은 등록번호,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 등), 상호, 등록일자, 대표자, 사업장 주소, 영업용 전화번호(광고용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한다), 영업내용(대부, 중개)이다. 다만, 법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하다.

나. 등록신청인의 주소,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사용인의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한다.(시행령 제2조의3제4항)

[해석 Ⅲ-5] 법제처 법령해석 07-0253('07.8.17.)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
- 대부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

6. 등록 제한사유

법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법 제4조제6호라목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으로 개정·시행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등의 등록이 제한된다.

1) 미성년자(만20세 미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민법 제4조, 제9조, 제12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은 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이하). 다만 법원에 의해 면책결정 또는 복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다.(일부면책시 등록불가)

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한다.

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부업법 규정(전체)과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과거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5조 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자가 해당된다.

① 대부업자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된 경우 추심담당 부서 또는 업무를 관리·감독 했던 임원

② 이자상한을 위반한 경우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임원(최종 결재자 등)

7. 변경등록

법 제5조(변경등록 등) ①대부업자등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한다(별지 6호 서식). 이 경우 광고와 관련된 전화번호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 제5조에 의거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나. 법 제5조제1항에서 말하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주소”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2개 이상의 영업소를 등록하고 있는 경우, 한 영업소의 변경등록 신청 사항은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같은 기간내에 변경등록 신청한다. 같은 시·도지사에게 2 이상의 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 하나에 다른 영업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라.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대부업자등은 최초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영 부칙 제2조(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마. 영업소가 본점 및 영업점의 통합 등으로 회사이름이나 대표·임원 등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영업점의 영업내용이나 고객관계 등에 큰 변동이 없다면 변경등록으로 처리한다. 이는 영업점의 영업이 지속성을 가짐에도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신규 등록시까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8. 폐 업

법 제5조(변경등록 등) ②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영 제3조(변경등록 등) ③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 신고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부업자는 폐업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별지 7호 서식)

나.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업자등은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내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한다(법 제14조)

- 1) 이자율의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검사 등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폐업신고 후에도 적용된다.
- 2) 계약서 교부의무, 대부조건의 게시 등 성질상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9. 등록증 분실 신고

법 제3조(등록 등) ⑥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영 제2조의3(등록등의 절차) ⑤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해당 대부업자등은 분실 즉시 분실신고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분실한 대부업자등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분실 사실이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영업정지

10. 등록증 반납

법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6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폐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에는 대부업
등을 등록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한다.

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분실해서
없는 경우, 대부업등을 등록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1.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수·추심금지

법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등록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채권 양수도 계약시, 반드시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IV. 명의대여 및 광고

1. 명의대여 등의 금지

법 제5조의2(상호 등) ④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명의 및 등록증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1) 명의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준 등록 대부업자는 명의 및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2) 명의 및 등록증 차용자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대부업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미등록 영업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의 제재사유에 해당한다.

나.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은 대부업 영위시의 ‘계산의 주체’ 및 ‘계약의 실질 당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서상 채권자는 등록업자 甲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권자는 미등록업자 乙이고 甲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위반시 제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 대부조건의 게시 의무

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영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가.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①대부이자율, ②이자계산 방법, ③변제방법, ④대부업 등록번호, ⑤연체이자율, ⑥부대비용의 내용 등이다

2) 게시물은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물의 내용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3. 등록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

가. 대부업자 광고시 필수 표시사항

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 1) 대부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3조, 제9조)

< 대부업자 광고시 포함해야할 내용 >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5-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업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
 - 5-2.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참고 IV-3-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표시·광고의 정의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나. 대부중개업자 광고시 필수 표시사항

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③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1)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3조, 제9조)

<대부중개업자 광고시 포함해야할 내용>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업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

5-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5-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광고시, 광고 문안과 표기 방법

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④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영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1) 대부업자등은 광고를 할 때, 필수 게시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특히, 광고문안을 표기할 때,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고,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크기를 같게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대부(주)”라는

대부업자가 “스피드론”이라는 대부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광고의 글자 크기를 “한국대부(주) > 스피드론”, “한국대부(주)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부대비용” 으로 표시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영업정지

라. 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법 제9조의3(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대부업자들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내용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타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동 시정조치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이 있다.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시·도지사는 위 사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참고 IV-3-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마.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법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금지) ①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한한다.
- 2)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대부중개업자에 한한다.
- 3) 시·도지사가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업자로부터 대부업자등의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협조한다.
- 4)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대부중개 광고를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가 가능하다

- 가)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여신금융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칠 것
- 나) 여신금융기관의 상호를 특정하고 대출모집인임을 명시할 것

☞ 위반시 제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V. 대부계약의 체결

1. 대부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교부·설명 의무

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대부업자가 그의 거래 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②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④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가. 대부계약서 작성시 다음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1-1. 대부업등 등록번호
 - 11-2. 연체이자율
 - 11-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11-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 계약서상 채권자(대부업자)는 실제로 대부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예시) 법인 : 000(주)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개인 : 박문수 인감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권고)

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한 후 대부계약서를 교부한다.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한다.

1) 대부계약서 하단에 “계약서의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대부계약서와 약관을 교부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란을 만들어 고객자필로 확인한다(권고)

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 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1. 대부업등 등록번호
 - 7-2. 연체이자율
 - 7-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7-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 계약서상 채권자(대부업자)는 실제로 대부업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예시) 법인 : 000(주)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개인: 박문수 인감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사용한다.

(권고)

라. 대부업자는 보증계약 체결시에 보증계약서의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모두 설명한 후 보증계약서 및 당해 대부계약서 사본을 교부한다. 이 경우 보증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계약서 사본 1부와 보증계약서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한다.

가) 보증계약서 하단에 “계약서의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대부계약서 사본과 보증계약서를 교부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란을 만들어 고객자필 확인한다.(권고)

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 또는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대부업법 위반이다.

2. 계약서 보관 및 열람·발급 의무

법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⑤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4조(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②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해당되는 경우)와 그 계약관계서류(대부계약대장, 원리금 및 부대비용 내역, 담보관련서류 등

고객이 제출한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법 개정전에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채무변제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1) 채무상환 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으로 대부계약서, 보증계약서,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와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보관해야 할 대부계약 관계서류>

1. 대부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2. 대부계약대장 : 대부계약 체결내역이 기재된 장부
3.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 개별 채무자와의 모든 금전수수 내역을 일자별로 구분기재
 - 대부계약대장 및 채무자와의 금전수수내역을 전산 관리하는 경우 전산 파일을 보관
4.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나. 관련서류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1)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열람문서는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날짜별 원리금 및 부대 비용 수수내역,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이고 발급문서는 채무(보증채무) 증명서 등이다.

- 2)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등 발급시의 발급비용과 관련하여 실비(발급비용 및 우편송달료 등 통상 1만원 이내 예상)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 대부업법 제6조의 증명서 발급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채권추심법 제5조에서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확인서 교부시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제재 :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영업정지

3. 중요사항 자필기재

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①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영 제4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가.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 및 보증인이 자필기재를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1) 채무자가 자필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이다

2) 보증인이 자필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은 ‘보증기간, 피보증 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이다.

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중요사항을 인터넷 입력하는 경우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을 거쳐 중요사항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인터넷에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성립 자체의 효력은 민법, 전자서명법 등 여타의 계약성립과 관련되는 법률이 적용된다.

2) 음성녹취에 대한 부분은 자필기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과잉대부의 금지

법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①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다만,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금액잔액(기존 대부금액 + 해당 대부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가 의무화되지 않는다.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소득에 관한 증명서류>

- 개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부채잔액증명서(신용조회로 부채상황 확인시 신용조회로 대신함)
 - 부동산등기권리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 기타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감사보고서(외부감사법인)
 -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신용조회로 부채상황 확인시 신용조회로 대신 함)
 - 부동산등기권리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 기타의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주의 소득·재산·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과잉대부로서 금지된다. 변제 능력에는 이자상환 능력은 물론 원금상환 능력도 포함한다.

다. 대부업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 법 제7조제3항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 제4조의3(과잉대부의 금지)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 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VI-1. 이자율의 제한(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1. 이자율의 최고 상한 - (대부업·여신금융기관 공통)

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영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가. 법상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49%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는 금지된다. 여신금융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9년 4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이자율제한 위반 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49%를 동 이자납입주기에 따라(일/월/분기 등)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약, 일 0.134%, 월 4.083%, 분기 12.25% 등)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VI- 1- ①] 법제처 법령해석 06-0017('06.3.24.)

☞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것인바, 대부업자가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에 이자부담이 집중되어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의 상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 것이 동 규정의 취지이다

- 2)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 (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 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며,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계산한다.

3) 이용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때에는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때에는 대출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존이자 (이자 및 간주이자)와 합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4) 대출계약이 채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등의 범위내에서 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기한내 에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시점의 이자로 간주되며 잔존기간에 안분되지 않는다.

5) 대출기간 계산시 원칙적으로 대출실행일 또는 상환일 중 하루만을 대출기간에 포함시키는 한편넣기 방식을 사용한다.

가) 이것은 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단, 대출당일 상환시에는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1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계산사례 ①)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5월 1일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후인 5월 11일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총 110만원을 수취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100만원
- 이자 : 10만원
- 10일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10\%$ (연 환산금리는 365%)

▶ 사용기간 10일의 제한금리(약 $1.342\% = 49\% \times 10/365$) 초과로 이자율제한 위반

(계산사례 ②)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매월 후취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 첫째 달에 10만원을 이자로 받고 그 후 매월 2만원씩 이자를 11회 받음. 갑은 1년간 받은 이자가 총 32만원이므로 연 32%로서 연49%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100만원
- 이자 : 1회 10만원, 2~12회 각 2만원, 1년간 32만원 수취
- 1회차 이자율 = $10\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월 } 10\% \text{ (연 } 120\%)$
- 2회차~12회차 각 이자율 = $2\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월 } 2\% \text{ (연 } 24\%)$
- 연간 총 이자율 = $32\text{만원}/100\text{만원} \times 100 = \text{연 } 32\%$

▶ 2~12회차 수취 이자율은 각 연 24%로 이자제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1회차 월이자율은 10%(연 환산이자율 120%)이므로 월이자율 제한(약 4.083%)을 초과하여 위반

나.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법 §8) 적용 대상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여신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모든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

가)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동법의 중소기업 중 ①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②기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8조)

2) 2005.9.1. 전에 체결된 계약은 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시행령 제2조제1호(삭제)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 제외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등록의무가 없어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05.9.1.부터는 대부업 등록의무 적용), 이 경우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율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대부업 등록 제외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월평균 대부잔액 5천만원 이하

나) 거래상대방 20인 이하

다) 광고하지 않음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 이자율 연30%(민사상) 상한을 적용받으며, 2008년 3월 22일 이후에는 연49%를 넘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09.1.21. 이후에는 연30% 초과시)에 해당한다.

[참고 VI- 1- ②] 대법원 선고, 2006.10.13, 2006도4837 판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 7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위반시 제재

(대부업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여신금융기관)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이자 공제시 이자율 산정 기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⑤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⑤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공제 금액을 제외한 교부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이 때 선이자란 선사례금, 선할인금, 선수수료, 선공제금, 선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 하더라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참고 VI- 1- ③] 대법원 '81.1.27. 80다2694 판결(구 이자제한법 관련)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 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가 소외 김00에게 1983. 7.20. 5,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그해 8.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까지의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채무자가 실제로 교부받은 대여금 4,700,000원과 여기에 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한이율(1980.1.12. 대통령령 제9714호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인 연4할의 이율에 따른 이자액 195,726원($4,700,000\text{원} \times 0.4 \times 38/365$ 원 미만 버림)을 합산한 4,895,72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1983. 8.27.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사례 ③)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달 후 100만원을 수취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이자 : 20만원(1달후 지급한 1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 이자율 = 20만원/80만원×100 = 25%(월 제한 약 4.083%을 초과)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12=300%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이자제한 초과

3. 간주이자(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김)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 중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취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 후에 실제로 교부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업법상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되는 금액은 이자(간주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설정비용은 저당권·가등기담보·매도담보·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그 밖에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가) 이 경우 대부업자가 담보물건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서도 근저당권 등에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민법상 전세권의 본래 목적 및 정의(용익물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 전세권 설정비는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담보설정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03조, 제108조 참조). 다만, 대부업자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 전세권이 민법상 전세권 정의에 부합하게 설정된 경우로써 실질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당해 대부와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이자에서 제외하는 신용정보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한다.

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9년 9월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등 7개사가 있다.

3)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 약정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한다.

가)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산출된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은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우선 실사용기간중 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이자 납입주기별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 기한내 에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중도상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시점의 이자로 간주되며 잔존기간에 안분되지 않는다.

4) 중도상환수수료의 잔존기간 안분 비율은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약정이율 또는 연체이율이 연 49%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 또한 약정이율이 49%인 경우에는 일체의 수수료(담보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제외) 및 연체가산이자를 받지 못한다.

(계산사례 ④) 대부업자 갑은 대출이 필요한 을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20만원, 취급수수료 명목 70만원 총 90만원을 공제하고 910만원을 지급, 1달후 원금 1,000만원을 수취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원본 : 최초 지급받은 910만원
- 이자 : 90만원(1달후 지급한 1,0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910만원)
- 1개월 이자율 = $90\text{만원} / 910\text{만원} \times 100 = 9.9\%$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 $\times 12 = 119\%$

▶ 수취 이자율은 월 9.9%(연이율 119%)로 이자율 월제한 약 4.083%(연 49%) 초과

(계산사례 ⑤) 여신금융기관이 2009년 4월 22일 1,000만원의 대출 12개월 만기 (약정이율 12%, 월이자 후취, 납기 매월 22일)을 취급하면서 취급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하고 99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고객이 정상 상환을 하던 중 6개월 경과시점인 10월 22일(잔존만기 6개월, 182일)에 원금(1,000만원)을 중도상환 하여 월 약정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상환액 1,000만원 $\times$ 중도상환 수수료 3%)를 징수하여 거래를 종료한 경우의 이자율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① 원본 : 990만원(선이자공제후 원본 = 약정금액 1,000만원 - 취급수수료 10만원)
- ② 이자 납입주기별 이자율제한 초과 여부(6차월 수취분을 월기준 약식계산)
 - 월 약정이자(1차월 ~ 6차월) : $1,000\text{만원} \times 12\% / 12 = 10\text{만원}$
 - 취급수수료 : $1,000\text{만원} - 990\text{만원} = 10\text{만원}$ (중도상환으로 6차월 수취인식)
 - i) 약정이자의 대부업법상 이율 : $10\text{만원} / 990\text{만원} = \text{월 } 1.01\%$
 - ii) 취급수수료의 대부업법상 이율 : $10\text{만원} / 990\text{만원} = \text{월 } 1.01\%$
 - iii) 중도상환수수료 월안분이율(6차월 수취) : $30\text{만원} / 990\text{만원} \times 1/6 = \text{월 } 0.505\%$

➡ 월상한 초과여부 : i) + ii) + iii) = 2.525%(월상한 4.083%을 초과하지 않음)

③ 실 사용기간중 연상한금리 초과 여부(4.22 ~ 10.22, 183일)

- 약정이자 총 수취금액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83/365 = 601,643\text{원}$
- 취급수수료(10.22. 수취인식) : $1,000\text{만원} - 990\text{만원} = 100,000\text{원}$ (간주이자)
- 약정이자와 취급수수료 합계 금액 : $601,643\text{원} + 100,000\text{원} = 701,643\text{원}$

i) 약정이자 수취분의 대부업법 이율 : $601,643\text{원}/990\text{만원} \times 365/183 =$
연 12.12%

ii) 취급수수료 가산이율(10.22. 수취인식) : $100,000\text{원}/990\text{만원} \times 365/183$
= 연 2.01%

iii) 중도상환수수료 이율(잔존기간 안분계산) : $30\text{만원}/990\text{만원} \times 365/182$
= 연 6.07%

➡ 연 환산이율 : i) + ii) + iii) = 20.2%(연상한 49%를 초과하지 않음)

4. 복리약정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가. 지급되지 않은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거나 원금에 이자를 산입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약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 가능하다. 다만, 원래의 원금을 기초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했을 때,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법령에 위반된다.

(계산사례 ⑥)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월 4%씩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월기준 약식계산

- 법상 허용되는 월 이자 한도 : 약 40,833원($1,000,000\text{원} \times \text{연}49\%/12$)
 - 1회차 이자 : 4만원($1,000,000\text{원} \times \text{월 } 4\%$)
 - 2회차 이자(1회 이자 미납시) : $(1,000,000\text{원} + 40,000\text{원}) \times \text{월}4\% = 41,600\text{원}$
 - 3회차 이자(1,2회 미납시) : $(1,000,000\text{원} + 40,000\text{원} + 41,600\text{원}) \times \text{월}4\% = 43,264\text{원}$
- 그러나 2회차 이자는 41,600원이고 3회차 이자는 43,264원이므로 월기준 이자 상한액 40,833원을 초과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임

5.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계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 1)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일수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포함된다.

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은 다음의 함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참고 VI-1-④]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함수식 = Rate(Nper,Pmt,PV,FV) × 365(또는 12)

- Nper(총상환횟수) : 100일동안 상환시 → 100
1달 한번 12회 상환시 → 12
- Pmt(매회 상환원리금) : 매회 12,000원 상환시 → 12,000
- PV(대부원금) : 받드시 (-)부호를 붙임
- FV(만기시 잔금) : 0을 입력
- 일수대출은 연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365”를 곱하고, 월수대출은 연
이자율로 환산하기 위해 “12”를 곱함

* 참고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대출이자 / 금리계산기

(계산사례 ⑦)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매일 12,000원씩 100일간 상환 받음

- 연 이자율 = Rate(100, 12000, - 1000000, 0) × 365 = 136.2%로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나) 원리금균등 상환으로서 선이자(선취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의 대부업법상 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이자율을 계산한다.

(계산사례 ⑧) 대출금 100만원, 취급수수료 3%, 정상이자율 12%, 대출기간 1년,
매월 88,848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하도록 계약한 경우

- 원금 : 100만원 - (100만원 × 3%) = 97만원

- 매월 납입 원리금 : 88,848원
- 1년간 총 수취금액 : 88,848원 × 12개월 = 1,066,176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엑셀 함수 RATE(12, 88848, -970000, 0) × 12개월 = 연 17.82%
(연상한이율 49% 이내)

▶ 단, 원리금균등 상환시에는 계약서에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표시한다

2) 원금 균등상환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과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선이자 공제후의 대부업법상 원본을 균등하게 나눈 후, 균등상환시의 이자율을 계산한다.

(계산사례 ⑨) 대출금 100만원, 취급수수료 3%, 정상이자율 12%, 대출기간 1년, 매월 원금 균등 상환 계약한 경우

- 원본 : 100만원 - (100만원 × 3%) = 97만원
- 대부업법상 매월 납입원금 : 원본 97만원 / 12개월 = 80,833원
- 매월 납입 이자 : (산식) 고객납입 원리금 - 80,833원
- 1차월 납입 이자액 : 93,333 - 80,833 = 12,500원
* 93,333(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만원/12) + 10,000(=100만원 × 12%/12)

- 2차월 납입 이자액 : $92,500 - 80,833 = 11,667$ 원

* $92,500(\text{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text{만원}/12) + 9,167(=916,667\text{원} \times 12\%/12)$

...

- 12차월 납입 이자액 : $84,166 - 80,833 = 3,333$ 원

* $84,166(\text{고객납입원리금}) = 83,333(=100\text{만원}/12) + 833(=83,333\text{원} \times 12\%/12)$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차월 : 이자액 12,500원 / 대출원금 970,000원 = 月 1.289%

○ 2차월 : 이자액 11,667원 / 대출원금 889,167원 (=97만원 - 80,833원) = 月 1.312%

...

○ 12차월 : 이자액 3,333원 / 대출원금 80,833원 = 月 4.123%

➡ 1~11차월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월상한 약 4.083%)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2차월(월 4.123%)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초과분 반환 필요

6. 한도거래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가. 대부업자의 한도거래시 이자율상한 규정의 적용

- 1)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조건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이자율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대부업자가 연 66%의 상한금리가 적용되는 2007년 1월 15일에 1년간 한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5일까지 연 66%의 상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2008년 3월 22일 이후에는 대부업법 개정
따라 과거 계약건에 대하여도 법 개정시행일 이후에는 연 49%의
제한금리를 적용받는다.

2) 상환이나 인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금전이 지급(인출)된
때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한다.

가) 채권자가 한도대출 계약 이후 신용저하로 한도잔액을 변경할
수 있다던가, 추가 대출시마다 별도의 절차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07.10.4일 이후에 인출된 금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49%의 인하된 상한금리를 적용한다.

다) 채무의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상 지정된 충당순서가
없는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순서로, 그 다음에는 채무자의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적용되는 이자율의 최고상한이 높은 순서)로
상환한다(민법 제477조)

(예시) 대부업자 갑은 을과 '07.9.3. 500만원의 한도약정 체결(인출시 별도절차
필요)

- ① '07.9.20. 200만원 대출 ⇒ 이자율 최고한도 연66% 적용
- ② '07.10.4. 100만원 추가대출 ⇒ 이자율 최고한도 연49% 적용
- ③ '07.11.4. 100만원 상환 ⇒ 연66% 적용되는 채무 100만원 소멸(잔액 :
200만원)

나. 2009년 9월 현재 연 49%의 이자율 상한 이내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
신금융기관이 인출 및 상환이 자유로운 한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다만,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제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계산사례 ⑩) 대부업자가 500만원의 한도대출을 1년 만기, 연 36% 이율(만기 후취)로 취급하고 대출시 5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직접 공제하여 수취하였다. 채무자는 최대 인출가능액인 450만원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본인 사용액 450만원과 대출취급시 취급수수료 50만원을 합친 500만원과 관련이자를 납부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450만원 (= 대출약정금액 500만원 - 취급수수료 50만원)
- 실제 사용액 : 450만원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 계산> - 연 상한이율 초과여부

- 사용기간 이율 : $162\text{만원} / 450\text{만원}(\text{사용금액}) = \text{연 } 36.0\%$
 - 실사용액 부리이자 : $450\text{만원}(\text{사용금액}) \times 36\% = 162\text{만원}$
- 한도약정수수료율 : $50\text{만원} / 450\text{만원}(\text{최대 인출가능금액}) = \text{연 } 11.1\%$
- 한도약정수수료 가산이율 : $(50\text{만원} \times 36\%) / 450\text{만원} = \text{연 } 4.0\%$
 - 대출취급시 공제된 한도약정수수료(50만원)에 대한 이율을 계산한다
- 총 이자율 : 연 51.1% (= 연 36.0% + 연 11.1% + 연 4.0%)
 - 실사용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율에 한도약정수수료 관련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

▶ 연 이자율 51.1% 이므로 연이자율 상한 49%를 초과하여 위반

7. 이자 제한과 계약의 효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③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가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경우 변제할 의무가 없다. 채무자가 이미 초과부분을 변제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대부업법상 원본과 법이 인정하는 최고 상한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내이며, 동 범위 내에서 원본 및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채무는 소멸된다.

(계산사례 ⑪)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총 110만원을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

<이자율 계산>

- 원금 : 100만원, 이자 : 10만원
- 1달 이자율 = $10\text{만원} / 100\text{만원} \times 100 = 10\%$ (연 환산이자율 120%)
- 상환하여야할 채무액 = $100\text{만원(원금)} + 40,833\text{원(이자 : } 100\text{만원} \times 49\%/12) = 1\text{백}4\text{만}833\text{원}$

▶ 이미 110만원을 대부업자에게 변제한 경우 1백4만833원과의 차액인 5만 9천167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성립시기

- 1) 1회라도 이자율의 최고상한(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때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가 성립되며, 계약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이자율의 최고상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법화하지는 못한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19조제2항)

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위반관련 조치

- 1)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8.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율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가.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제한은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그 밖의 모든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나. 다만,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받는데, 연30%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계산사례 ⑫) 미등록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1달 후 원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 총 110만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환하였음

○ 상환해야 할 채무액 = 100만원(원금) + 2만5천원(이자 : $100\text{만원} \times 30\%/12$) = 1백2만5천원

▶ 110만원과 1백2만5천원과의 차액인 7만5천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표 VI-8〉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비교

구 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범위	• 미등록 대부업자 및 사인간 거래	•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 연 30%	• 대부업자 : 연 49% • 미등록 대부업자 : 연 30%
형사처벌	• 관련 규정 없음(민사)	• 미등록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자율 제한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계약시점별 이자율의 최고상한 (대부업자)

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법령 개정으로 계약시점 및 법령 시행일에 따라 적용이율이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대부업자

가) 대부계약의 체결시점에 따라 최초 대부업법 시행일인 2002년 10월 27일부터는 이자율이 연 66%의 상한을 적용받으며, 2007년 10월 4일부터는 연 4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나) 다만, 2008년 3월 22일 이후에는 이전 대부계약건을 포함하여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07.12.21. 대부업법 개정).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2.10.26.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2.10.27. ~ '07.10. 3.	연66%
'07.10. 4. ~ '08. 3.21.	연49%
'08.3.22. ~ (이전계약건 포함)	연49%

2) 미등록 대부업자

가) 계약시점이 대부업법 시행일인 2002년 10월 27일 이후인 경우에는 연 66%의 상한금리를 적용받으나, 2007년 6월 30일부터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연 30%의 상한금리가 적용된다.

나) 한편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관련 형사처벌기준은 2002년 10월 27일 이후에는 연 66%, 2007년 10월 4일 이후에는 연 49%이고, 2009년 1월 21일부터는 연 30%의 상한금리가 적용된다.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2.10.26.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2.10.27. ~ '07. 6.29.	연66%(민사상 효력)
'02.10.27. ~ '07.10. 3.	연66%(형사상 기준)
'07. 6.30.~ (이전계약건 포함)	연30%(민사상 효력)
'07.10.4. ~ '08. 3.21.	연49%(형사상 기준)
'08.3.22.~ (이전계약건 포함)	연49%(형사상 기준)
'09.1.21.~ (이전계약건 포함)	연30%(형사상 기준)

3) 일반인(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자)

가) 2007년 6월 29일 이전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금리를 직접 규제받지 않으나 2007년 6월 30일부터는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연 30%의 상한금리가 적용된다.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7. 6.29.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7. 6.30. ~ (이전계약건 포함)	연30%

10. 이자계산의 시기(始期), 이자 지급일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공통)

가. 이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 금전을 빌리는 자가 대부업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나. 이자는 당사자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토·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여도 연체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연체이자 아닌 정상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다만,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 '07.8.24. 대부업자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매달 연 24% (월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 첫번째 이자지급일인 '07.9.25.은 추석연휴 기간으로, 같은 기간중 은행은 영업점을 열지 않으며, '07.9.27. 영업점을 개점 <상환일> '07.9.25.(인터넷이체 또는 방문 상환)

▶ 공휴일 다음 영업일인 '07.9.27.에 상환하여도 연체로 보지 않음. 다만, 2일 간의 이자를 추가지급할 의무 발생하여 이 경우 지급할 이자는 한달치 이자 2만원에 2일 이자 1,315원($100\text{만원} \times \text{연}24\% \times 2/365$)을 합한 2만1,315원 이다

VI-2. 여신금융기관 이자율제한의 사례별 적용

1.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영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가. 여신금융기관은 연 이율 49%(약, 월 4.083%, 일 0.134%)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을 수 없다. 여신금융기관은 기존 계약건을 포함하여 대부업법이 개정된 2009년 4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1) 이자율제한 초과여부는 실제 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연 49%를 동 이자납입 주기에 따라(일/월/분기 등) 단리로 환산한 이자율(약, 일 0.134%, 월 4.083%, 분기 12.25% 등)에 대한 제한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비용 (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며, 추후에 동 원본금액 이외에 추가로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이자(간주이자)로 보아 합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계산한다. 선이자 공제와 관련하여 2009년 4월22일 전의 대출실행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3) 이용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때에도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율을 계산하고 이를 기존이자(이자 및 간주이자)와 합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4) 대출금중 일부를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액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1) 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
-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 ③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나)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3배 이내로 하며 동 제한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그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가)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2% 이내로 하며 동 제한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시 제재 : 금융위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간주이자

법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영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영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9를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가. 간주이자의 범위

- 1) 이자율 산정시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자로 간주한다. 다만, 대출시점에 수수료 등을 선취한 경우에는 선이자(선취수수료)로서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므로, 공제후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을 이자율 산정시의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 위반 여부를 계산하며, 추후에 동 간주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은 간주이자이다.

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것 중 담보권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신용조회비용은 대부업법상 대출부대비용으로서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며,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 발생하는 인지세, ATM기 이용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부채증명서 등)는 실비(實費)의 범위 내에서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

2) 대부거래가 아닌 경우 관련 수수료는 이자율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지급보증만 존재하는 등 직접적 자금 교부가 없는 경우 대부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무역금융(신용장발행 등)에서 순수 지급보증(원화, 외화)만 발생하고 대부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여신금융기관이 받지 않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직접지급하는 것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직접 수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신금융기관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간주이자 인식시기

1)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간주이자로 계산한다. 다만 수수료(취급수수료 등)를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에는 선이자(선취수수료)로서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한다.

2) 수수료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련 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계산한다.

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 있으므로 상환일로부터 만기까지 대출잔존기간에 안분한다.

나) PF대출에서 주선수수료 및 자문수수료(용역결과가 있는 경우)는
관련되는 PF 전체금액을 대상으로 산출하여 대출 약정기간에
안분한다.

(계산사례 ①) 고객이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을 약정하면서 취급수수료 1%(10만원) 납부하고, 10일 경과 시점에 대출금
1,000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추가로 중도상환수수료 2%(20만원)을 여신금융
기관이 징수

- 대출원본 : 990만원(대출 약정금액 1,000만원 - 취급수수료 10만원)
- 10일 이자 수취액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0/365\text{일} = 32,876\text{원}$
- 중도상환수수료 이율(연) : $20\text{만원} / 990\text{만원} \times 365/355 = 2.077\%$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32,876\text{원} / 990\text{만원}) + (2.077\% \times 10/365\text{일}) = 1.399\%$

▶ 10일 동안의 이자율상한(1.342%)보다 높으므로 이자율 제한 위반

(계산사례 ②) 고객 A가 고객 B의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
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 채무를 인수하면서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인수수
수수료 35만원을 징수

- 대출원본 : 1,000만원
- 월이자액(1차월) : $1,000\text{만원} \times 12\% / 12\text{개월} + 35\text{만원(채무인수수료)} = 45\text{만원}$
- 월이자액(2차월~12차월) : $1,000\text{만원} \times 12\% / 12\text{개월} = 10\text{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1차월 : $45\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4.50\%(\text{대부업법 위반})$
- 2차월 ~ 12차월 : $10\text{만원} / 1,000\text{만원} = \text{월 } 1.00\%$

▶ 1차월 월이자율 제한(약 4.083%)을 초과하여 대부업법 위반

(계산사례 ③) 여신금융기관이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12%, 약정기간 12개월, 월이자 후취)을 취급하면서 신용조사수수료 10만원을 받고 대출한 후, 6개월차 이자 납입기일에 약정만기 6개월을 남기고 전액상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약정금액 1,000만원 × 3%)을 징수

- 원본 : 990만원(대출금액 1,000만원 - 신용조사수수료 10만원)
- 한달 이자 : $(1,000\text{만원} \times 12\% \times 1/12) = 10\text{만원}$
- 신용조사수수료(간주이자, 6차월 수취인식) : 1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잔존기간 6개월) : 30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월 단위로 약식계산함

- 1차월 ~ 5차월 : $10\text{만원}/990\text{만원} = \text{월 } 1.01\%$
- 6차월 : $2.02\%(=20\text{만원}/990\text{만원}) + 30\text{만원}/990\text{만원} \times 1/6 = \text{월 } 2.525\%$
 - 6월중 정상이율 : $20\text{만원}/990\text{만원}$ (약정이자 및 간주이자 인식) = 월 2.02%
 - 중도상환수수료율 : $30\text{만원}/990\text{만원} \times 12/6 = \text{연 } 6.06\%, \text{월 } 0.505\%$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시점에 수취·인식하므로 월 환산이율을 6차월에 합산)

▶ 1차월~6차월 월이자율 제한(4.083%)을 초과하지 않음

(계산사례 ④) 여신금융기관이 1월 2일 12개월 만기,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24%, 연체이자율 36%, 월이자 후취)을 취급하면서 20만원의 취급수수료를 선취하였다. 대출 시행후 고객은 이자를 정상납입하다가 9월차 납기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계속 연체가 진행되다가 약정만기일인 익년 1월 2일에 관련 이자 및 원금을 전액상환 (약정원금 1,000만원과 연체이자 등)하여 동 대출건을 정리하였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의해 1개월까지는 연체된 약정이자에 대하여, 1개월 경과시에는 전체 원금에 대하여 부과한다.

- 대출원본 : 980만원(대출 약정금액 1,000만원 - 취급수수료 20만원)
- 1~9차월의 매월 약정이자 : $1,000\text{만원} \times 24\% \times 1/12 = 20\text{만원}$
- 10차월 발생이자 = 20만원(약정이자) + $20\text{만원} \times 36\% \times 1/12$ (연체이자)
= 20.6만원
- 11차월 발생이자(연체이자) = $1,000\text{만원} \times 36\% \times 1/12 = 30\text{만원}$
- 12차월 발생이자 = 30만원(연체이자) + 20만원(취급수수료 수취인식)
= 50만원
- 총 수취이자 = 180만원(1~9차월) + 20.6만원(10차월) + 30만원(11차월)
+ 50만원(12차월) = 280.6만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 발생월 기준 약식계산

- 1차월 ~ 9차월 : $20\text{만원}/980\text{만원} = \text{月 } 2.041\% \text{ (연환산 } 24.49\%)$
- 10차월 : $20.6\text{만원}/980\text{만원} = \text{月 } 2.102\% \text{ (연환산 } 25.22\%)$
- 11차월 : $30\text{만원}/980\text{만원} = \text{月 } 3.061\% \text{ (연환산 } 36.73\%)$
- 12차월 : $50\text{만원}/980\text{만원} = \text{月 } 5.102\% \text{ (연환산 } 61.22\%)$
- 연간 총 이자율 = $280.6\text{만원}/980\text{만원} \times 100 = \text{연 } 28.63\%$

▶ 1~11회차 수취 이자율은 월이자제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12회차 월이율은 5.102%로 월이자율 제한(약 4.083%)을 초과하여 위반

3.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특수금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 114번 ‘특수금융’ 정의 참조)

- 1) PF(Project Finance) :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2) OF(Object Finance) :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자산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3) CF(Commodities Finance) :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원유, 금속, 농작물 등)과 관련된 매장자원, 재고자산 또는 미수금 등에 의해 담보되고 동 자산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구조화된 단기 여신
- 4) IPRE(Income-Producing Real Estate) :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나대지, 공동주택,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차환(refinancing) 또는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여신
- 5) HVCRE(High-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 :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와 같은 현금흐름의 저조(미분양 등)로 인해 여신 초기에 잠재적으로 상환재원이 불확실하여 손실률 변동성이 높은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여신으로, 건설 관련 토지 구입, 개발 및 건축의 각 단계에 수반된 여신

- 6) 기타 인수금융을 포함한 신디케이션 론(syndication loan)으로서 주선수수료, 참여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여신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선수수료는 PF사업의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하여 금융조건을 제시하고 참여은행을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대출금이 원활히 인출되어 상환될 때까지 여신의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서비스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2) 자문수수료는 PF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거나 계획 등을 검토하고 금융 및 법률적인 자문 등을 수행하는 등 사업시행전 해당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3) 참여수수료는 신디케이션의 참여기관으로서 여신을 제공하는 등 계약에 명시된 대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4) 대리은행수수료는 신디케이션의 대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자금관리 등 제반 사후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수입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 PF 대출 이자율 계산시 수수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주선수수료는 대출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서비스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므로 전체약정금액(주선약정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수수료율(이자율)을 산출하고 대출 약정 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것은 주선수수료와 참여수수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 2) 자문수수료는 대출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므로 전체약정금액(자문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수수료율(이자율)을 산출하고 대출 약정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용역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참여수수료는 대출 참여분(참여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취급시점의 이자로 계산한다. 다만 참여수수료를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에는 선이자(선취수수료)로서 참여약정금액에서 공제되며, 참여약정금액에서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고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한다.
- 4) 대리은행수수료는 전체약정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여 수취하는 납기에 이자율을 가산한다.

(계산사례 ⑤) A은행은 AAA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전체 약정금액은 1조원이며 A은행은 1,000억원의 PF대출을 참여하기로 하였다. 대출약정기간은 3년이며 대출이자율은 연8%로 매월 후취, 자문수수료 및 주선수수료는 전체 약정금액에 대하여 각각 1%를 대출시점에 수취하고, 참여수수료는 참여약정금액의 1%, 대리은행수수료 5억원을 대출 1개월 후에 후취하였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이자율 상한 적용이자율의 산출(PF 대출기간 3년)

(단위 : 억원)

구 분	약정 금액	수입이자/수수료				적용이자율주)			
		약정율 (%)	수취 방법	금액 (1년)	관련 기간	대부업법상 원본	적용방법	연이자율 (상한49%)	1차월 이자율
참여수수료	1,000	1.00	일시	10	3년	990	일시 인식	1.01%	1.01%
PF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1,000	8.00 (24.00)	연율	80 (240)	3년	990	약정기간중 인식	8.08% (24.24%)	0.67% (2.02%)
대리은행 수수료	10,000	0.05	일시	5	3년	(10,000)	납입당기 인식	0.05%	0.05%
자문수수료	10,000	1.00	일시	100	3년	(10,000)	대출기간 안분	0.33%	0.03%
주선수수료	10,000	1.00	일시	100	3년	(10,000)	대출기간 안분	0.33%	0.03%
합계	-	-	-	295			-	9.80% (25.96%)	1.79% (3.14%)

- 이자납입주기가 1개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 1차월의 이자율이 1.79% 이므로 월 상한이율 약 4.083%를 초과하지 않음.(연체이자율로 계산시에는 3.14%)
-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이자율의 합계가 9.80%이므로 연 상한이율 49.0%를 초과하지 않음.(연체이자율로 적용시에는 25.96%)

☑ 월이자율은 1.79%로 월이자율 제한(약 4.083%)을 초과하지 않고, 연이자율은 9.80%로 연이자율 제한(49%)을 초과하지 않음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자납입주기는 이용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카드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중도상환시 이자납입주기는 실제사용기간으로 본다.

(예시1) 카드대금결제일이 매월 25일인 고객이 7월 2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고 8월 25일에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납입주기는 54일(7월 3일부터 8월 25일)

(예시2) 카드대금결제일이 매월 25일인 고객이 7월 31일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고 8월 25일에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납입주기는 25일(8월 1일부터 8월 25일)

(계산사례 ⑥) 현금서비스 100만원, 취급수수료 0.6%(후취), 정상이자율 25%, 중도상환수수료 0.4%, 7일 전액 중도상환 (7월1일 현금서비스 취급, 결제일 7월21일)

- 대출원본 : 100만원
- 취급수수료 : 100만원 × 0.6% = 6,000원
- 이자액 : 100만원 × 25% × 6일/365일 = 4,110원
- 중도상환수수료 : 100만원 × 0.4% = 4,000원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취급수수료(6일) : 6,000/100만원 = 0.6%
- 이자 (6일) : 4,110원/100만원 = 0.411%
- 중도상환수수료율(6일이율로 환산시) : $0.4\% \times 365/14 \times 6/365 = 0.17\%$
 -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 안분하여 연율 환산시 : $0.4\% \times 365/14 =$ 연 10.42%

▶ 중도상환한 6일 이자율 1.181%로 현금서비스 실제 사용기간인 6일간의 이자율 제한 0.805%(=49% × 6/365) 위반

다. 신용카드 카드론, 할부금융 등 사전에 이자 납입일을 약정한 상품은 사전 약정한 이자 납입주기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예시1) 7월 1일 할부금융 1,000만원을 받고 이자납입일을 매월 25일로 약정하여 1차월 이자를 7월 25일에 납입하기로 한 경우 이자납입주기는 25일(25일 이자율 제한 3.36%), 2차월 이후 이자납입주기는 월(月)로 본다.(月 약 4.083%)

(예시2) 7월 1일 할부금융 1,000만원을 받고 이자 납입일을 매월 5일로 약정하여 1차월 이자를 8월 5일에 납입하기로 한 경우 1차월 이자납입주기는 35일(이자율 제한 35일간 4.70%), 2차월 이후 이자납입주기는 월(月)로 본다.(月 약 4.083%)

5. 한도거래

가. 인출과 상환이 자유로운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1)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한다. 다만, 한도약정 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제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계산사례 ⑦) 여신금융기관이 1,000만원의 한도대출을 연 12%의 이율(만기 후취)으로 1년 약정하고 대출시 10만원의 한도약정수수료로 직접 공제하였다. 채무자는 대출 초일에 500만원을 인출·사용하고 만기일에 본인 사용액 500만원과 대출취급시 한도약정수수료 10만원을 합친 510만원과 관련이자를 납부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990만원 (=대출약정금액 1,000만원 - 약정수수료 10만원)

○ 실제 사용액 : 500만원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 계산> - 연상한 초과여부

○ 사용기간 이율 : 60만원(12개월간 약정이자)/500만원(사용금액) = 연 12.0%

○ 한도약정수수료율 : 10만원/990만원(인출가능금액) = 연 1.01%

○ 한도약정수수료 가산이율 : (10만원×12%)/990만원 = 연 0.12%

▶ 연 이자율 : 12.0% + 1.01% + 0.12% = 13.13%(연 49% 이내)

(계산사례 ⑧) 여신금융기관이 2009년 5월 1일에 1,000만원의 대출(약정이율 24%, 약정기간 3개월, 월납 후취)을 취급하였다. 채무자는 한도대출 실행일부터 6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매월 후취이자는 별도 납입하였다. 이후 채무자는 자금계획 변경으로 취급후 6개월 경과 후인 11월 1일에 한도 사용금액 600만원 및 월이자 20만원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한도약정을 해지하였다.

○ 최대 인출가능금액 : 1,000만원

○ 실제 사용액 : 600만원

○ 약정이자(월) : (600만원×24%÷12월)/600만원 = 20만원 (월 2.0%)

○ 중도상환수수료율(연) : {(30만원/1,000만원)×100} ÷ 12/6 = 6.0%(월: 0.5%)

- 잔여 기간(6개월)에 안분계산하여 이율에 가산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 - 월 기준 약식계산

○ 실대출기간중 연이자율 = 24.0%(약정이율) + 6.0%(중도상환수수료율) = 30.0%

○ 월 이자율(6차월) = 2.0%(월 약정이자율) + 0.5%(중도상환수수료) = 2.5%

▶ 실대출 기간중 연이자율도 30.0%로 연이율 제한(49%)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6월차의 월 이자율은 2.5%로 월이자율 제한(약 4.083%)을 초과하지 않는다.

VII. 중개의 제한

1.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 금지

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이용자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중개할 수 없다.

- 1) 일반인이라도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행위를 위하여 금융이용자 소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는 계약시 등록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②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1) 중개수수료는 중개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수고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말한다

나. 대부업자는 대부중개를 받는 경우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직접 수취하지 않도록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권고)

☞ 위반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참고 VII-1〕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중개수수료 수취

○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해당

☞ 위반시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VIII. 검사, 감독 및 실태조사

1. 보고·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법 제12조(검사 등) ①시, 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가.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를 통하여 대부업 주요 현안, 영업실태 및 재산상황 파악을 통해 감독정책업무 수립, 집행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에 활용한다.

나. 명령의 형태

- 1) 보고 명령 : 시·도지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도청 또는 대부업자의 본점 또는 영업소에서 보고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2) 자료제출 명령 : 영업현황 등 데이터, 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 대부광고 내용 등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3) 그 밖에 필요한 명령 : 보고·자료제출명령 이외에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명령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2. 시·도지사의 검사

법 제12조(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업자등의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은 법 준수 여부 점검,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 및 보고·제출 자료의 허위여부 점검 등이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관할 밖에 있는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검사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검사 요청을 통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영업소를 검사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 등)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3. 금융감독원 위탁 검사

법 제12조(검사 등) ③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7조의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 ①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부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후 동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1)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 2) 매월말 기준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잔액은 대차대조표상 대부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3)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연계되고,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및 대상

법 제12조(검사 등) ④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영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 ①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 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②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대부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후 동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 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이 때 대부업자등이 타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7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직권검사 대상이 된다.

나.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금융감독원장이 통보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검사의 사후관리에 참고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법 제12조제5항은 5백만원), 영업 정지 및 등록취소

5.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법 제12조(검사 등) ⑦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그 대부업자등의 영업소가 있으면 그 명령의 내용을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가. 시·도지사는 보고·제출된 자료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부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업체의 영업소를 감독하는 타 시·도지사에게 명령의 내용을 통보한다.

1) 명령의 내용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아래 있는 영업소 감독업무 또는 행정조치(영업정지, 등록취소)에 활용한다.

6. 업무보고서 제출

법 제12조(검사 등) ⑨대부업자등은 영업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

영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업무보고서 제출 기준일은 연 2회로서 다음과 같다.

가) 6.30(1.1~6.30) 기준으로 제출하며 기준일 익월 말일(7.31)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12.31(7.1~12.31) 기준으로 제출하며 기준일 익월 말일(1.31)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업무보고서(별지 8호 서식, 개인용 및 법인용)의 기재사항

가)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영업소 업무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금액,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영업소 업무현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위반시 제재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 제 재

- 제재절차는 대부업법 및 행정절차법 준수
 - 처분의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 처분(이유제시, 문서주의, 불복절차의 고지)

가. 영업정지

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7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1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 1) 시·도지사는 일정한 경우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 사유

- ① 대부업법 위반 : 이자율 제한 위반 등
- ② 공정채권추심법 위반 :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금지 위반 등
- ③ 대부업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 검사 결과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 위반 등
- ④ 광역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소 중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내에 있는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시·도지사는 업무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신규 계약 체결 금지, 광고금지 등 업무의 일부를 특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重科)되는 영업정지 기간에 경과(輕科)되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을 가중할 수 있다.

-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등록취소

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영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 1)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취소사유). 예를 들면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이 있다.

나) 대부업자등이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신규 대출이 없더라도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가 계속 상환되거나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 별표 1에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바) 대부업자등의 소재불명으로 시·도지사가 소재확인 공고를 하고
30일 내에 대부업자등으로부터 소재지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① 공고의 내용은 ‘당해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공고의 방식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사) 대부업자등이 대통령령 별표 1의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아)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법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 법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법 제2항제6호(대부업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등록취소): 생략 가능

이 경우, ①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②소재불명
등의 경우, ③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3)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과태료의 병과가 가능하다

8. 행정처분의 시·도지사에게 대한 통보

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⑤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营业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2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업체의 지점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할 사실을 미리 통보한다.

1)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9.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 종결

법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가.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및 효과

1) 사망, 해산(당연 소멸)

개인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시 사망자(해산된 법인)의 등록은 당연히 소멸된다. 시·도지사의 취소행위는 이미 소멸된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2) 대부업자의 신청에 따른 폐업

대부업자가 폐업하고 법 §5② 및 영 §3③에 따라 신고한 경우이다.

3)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대부업자의 등록을 직권 취소한다.

나. 등록취소 등의 효과

1) 등록이 취소된 자, 폐업한 자, 사망 등으로 당연소멸된 자(대부업자 등이 개인인 경우 상속인 포함)는 기존 대부채권을 종결하는 범위 내(원금 및 이자 회수)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된다.

2) 개인 대부업자등의 사망시 대부채권을 포함한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등록 대부업자등의 자격은 상속되지 않는다

IX. 대부업자등 협회 가입 및 교육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협회 가입

법 제18조의5(가입 등) ①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의무가입 대상

1) 대부업자등이 다음의 금융감독원장 직권검사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즉시 가입해야 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부업자등이 타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에도 자산이 70억 이상이면 대부업협회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의무가입대상인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법 위반상태가 된다.

나)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나. 의무가입 대상 이외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X.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가.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을 제정(2009.2.6.)하고 대부업법의 개정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추심에 대한 규제가 통합·시행(2009.8.7) 되었다.

2. 적용 대상

가. 공정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의 범위(공정채권추심법 제2조)

-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 받은 자, 그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 받은 자
-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 3) 앞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도급·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 추심을 하는 자

나. 채무자 및 관계인의 정의

- 1)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추심자에 대한 금지행위

가. 폭행·협박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공정채권추심법 제9조)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나. 개인정보 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공정채권추심법 제10조)

1)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술(前述)한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 표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공정채권추심법 제11조)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라. 불공정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공정채권추심법 제12조)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마. 부당한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공정채권추심법 제13조)

-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위임 금지(공정채권추심법 제7조)

- 1)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추심자의 의무

가. 채무확인서의 교부의무 관련(공정채권추심법 제5조)

- 1)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대부업법 제10조의2)

- 1)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는 채권추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와 연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제재관련 규정

가. 벌칙 관련사항은 공정채권추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나. 공정채권추심법상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공정채권추심법 제18조)

(첨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정 2009. 4.15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해야하는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신청서)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등록증)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등록증 분실신고서)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교육이수증) 영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변경등록신청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폐업신고서)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보고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제출해야하는 보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4. 22일 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서식 2]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서식 3]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서식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서식 5] 교육이수증

[서식 6]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7]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서식 8] 업무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09.4.15>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청영입소	① 명 칭(상 호)		② 본 점 여 부 ☐ 본점 ☐ 지점	
	③ 법 인 등 록 번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홈 페 이 지 주 소			
	⑧ 전 화 번 호 (영업소)		⑨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⑩ 대 표 자 주 소			
	⑪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⑫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⑬ 등 록 신 청 사 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⑭ 명 칭(상 호)		⑮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⑯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⑰ 법 인 등 록 번 호
⑱ 대 표 자 성 명			⑲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㉔ 소 재 지				
㉕ 홈 페 이지 주 소				
㉖ 전 화 번 호 (영업소)			㉗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㉘ 대 표 자 주 소				
㉙ 사 업 내 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㉚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㉛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㉞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㉟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성명	주 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09.4.15>

대 부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 록 유효 기 간	
상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 록 유효 기 간	
상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illegible]

– 115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 칭(상 호)		② 본 점 여 부	☐ 본점	☐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법 인 등 록 번 호			
	⑥ 대 표 자 성 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소 재 지					
	⑨ 홈 페 이 지 주 소					
	⑩ 전 화 번 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대 표 자 주 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⑮ 등록 갱 신 신청 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⑯ 명 칭(상 호)		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⑱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⑲ 법 인 등 록 번 호			
	⑳ 대 표 자 성 명		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㉒ 소 재 지					
	㉓ 홈 페 이 지 주 소					
	㉔ 전 화 번 호(영업소)		㉕ 전 화 번 호(휴대전화)			
	㉖ 대 표 자 주 소					
	㉗ 사 업 내 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①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①						

– 116 –

제 호

교 육 이 수 증

교육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부(중개)업자 명칭(상호) :

등록지역 :

등록번호 :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제3조의 4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신규등록, ☐갱신등록)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교육이수증의 교부자 명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명칭에 따른 협회의 장으로 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명 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홈 페 이 지 주 소			
	⑦ 대 표 자 주 소			
	⑧ 전 화 번 호(영업소)		⑨ 전 화 번 호(휴대전화)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⑩ 명 칭(상호)			
	⑪ 대 표 자	성명		
		주소		
	⑫ 업무총괄 사 용 인	성명		
		주소		
	⑬ 소 재 지			
	⑭ 전 화 번 호(영업소)			
⑮ 홈 페 이 지 주 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의 소재지 변경시) 3.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인				

– 118 –

⑩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⑪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	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illegible]

– 120 –

【별지 제8호 서식】 <제정 2009.4.15>

업 무 보 고 서

(개인용)

상호명 : 작성자 성명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1. 일반현황

항 목	내 용	항 목	내 용
등록지역 ⁽¹⁾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²⁾		대표자 성명	
등록일자 ⁽³⁾		사업장전화번호	
사업내용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임직원수		영업소수(갯수)	
사업장주소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로 구분
2.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
3.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기재, 예) 1998-08-26

2. 대부·대부중개·차입 현황

가. 대부현황

(단위 : 명, %, 원)

구분	거래자수	대부금액	평균대부금리 ⁽³⁾
신용대출 ⁽¹⁾			
담보대출 ⁽²⁾			
합 계			

1. 신용대출은 순수신용,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2.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주택담보 대출 등)
3. 평균대부금리는 연금리 기준으로 기재
4. 대출금액은 1.1~6.30 또는 7.1~12.31 기간동안 대출한 금액이 아니라 6.30. 또는 12.30. 현재 대출중인 금액을 말함

나. 대부중개현황

(단위 : 개, 건, 원)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중개거래자수	중개금액	수입 중개수수료

1. 1.1~6.30 또는 7.1~12.31 기간동안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대부중개한 건수 및 금액,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기재

다. 차입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차입처수	차입금액	평균차입금리 ⁽³⁾
금융회사차입금 ⁽¹⁾			
일반차입금 ⁽²⁾			
합계			

1.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예시: 개인, 일반 법인,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
3. 평균차입금리는 연금리 기준으로 기재

업 무 보 고 서

(법인용)

상호명 : 작성자 성명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1. 일반현황

항 목	내 용	항목	내 용
등록지역 ⁽¹⁾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²⁾		대표자 성명	
등록일자 ⁽³⁾		결산월 ⁽⁴⁾	
전화번호		임직원수	
최대주주명 ⁽⁵⁾		최대주주지분율(%)	
사업내용	☐ 대부 ☐ 대부중개 ☐ 대부 및 대부중개		
소재지		영업유무 ⁽⁶⁾	☐ 1 ☐ 2 ☐ 3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로 구분
2. 등록신청서상 상호를 기재
3. 등록일자는 (yyyy-mm-dd) 양식으로 작성, 예) 1998-08-26
4. 결산월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31일 인경우 12월로 표기
5. 최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최대주주명(국적)을 표시, 예) 홍길동(미국)
6. 영업종은 1번, 신규대부는 중단하고 채권회수만 하는 경우는 2번, 채권이 없고 영업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인 경우 3번으로 기재

2. 지점현황

연번	상호	등록번호	임직원수	전화번호	소 재 지
1					
2					
3					
4					
5					
6					

1. 지점현황은 본점만 작성
2.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3. 자산·부채현황

(단위 : 명, %, 원)

① 자산 ⁽¹⁾	② 부채	③ 자본	④ 자본금	⑤ 당기순이익

1.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임
2.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4. 대부·대부중개·차입 현황

가. 대부현황

(단위 : 명, %, 원)

구분	거래자수	대부금액	평균대부금리 ⁽³⁾	평균연체율 ⁽⁴⁾
신용대출 ⁽¹⁾				
담보대출 ⁽²⁾				
합 계				

1. 신용대출은 순수신용,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포함
2.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주택담보 대출 등)
3. 평균대부금리는 연금리 기준으로 기재
4. 평균연체율 = (연체대출금/전체대출금)
 - 연체대출금의 정의
 -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
 -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
5. 대출금액은 1.1~6.30 또는 7.1~12.31 기간동안 대출한 금액이 아니라 6.30. 또는 12.31. 현재 대출 중인 금액을 말함
6.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나. 대부중개현황

(단위 : 개, 건, 원)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중개거래자수	중개금액	수입 중개수수료

1. 1.1~6.30 또는 7.1~12.31 기간동안 대부중개계약 상대업체수, 대부중개한 건수 및 금액,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기재
2.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다. 차입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차입처수	차입금액	평균차입금리 ⁽³⁾
금융회사차입금 ⁽¹⁾			
일반차입금 ⁽²⁾			
합계			

1. 금융회사(은행, 상호저축은행 등)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예시: 개인, 일반 법인,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입)
3. 평균차입금리는 연금리 기준으로 기재
4. 본점은 각 지점분을 포함하여 작성

(첨부 2)

대부업법의 제재관련 규정 및 조치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09.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09.2.6>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1]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삭제 <2009.2.6>

11.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09.2.6>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1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다.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마.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바.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파.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하.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거.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너.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더.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러.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머.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버. 법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서. 삭제 <2009.8.5>				
어. 삭제 <2009.8.5>				
저. 삭제 <2009.8.5>				
차. 삭제 <2009.8.5>				
커. 삭제 <2009.8.5>				
터.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퍼.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노.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도.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2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로.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지 3월	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등록취소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영업 일부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1호	2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2호	50	250	500
다. 법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3호	50	250	5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20	100	200
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50	250	500
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50	250	500
사.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2호	200	500	1,000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0	500	1,000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4호	50	250	500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4호	50	250	500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5호	50	250	500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5호	200	500	1,000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6호	50	250	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7호	50	250	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8호	200	500	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6호	50	250	500
더.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9호	200	500	1,000
러. 삭제 <2009.8.5>				
머. 삭제 <2009.8.5>				
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8호	20	100	200
서.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1호	500	1,000	1,500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어.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9호	50	250	500
저.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법 제21조제1항 제12호	200	500	1,000
처.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제2항 제10호	50	250	500

(첨부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9.8.7 시행, ’09.2.6, 제정] -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 다.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 추심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업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벌칙) ①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 ③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록 등을 한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9418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3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4조 단서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부 과 대 상	근거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법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300	600	1,400
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법 제2조제1호다목에 규정된 자와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6조, 제17조제2항제1호	150	300	700
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법 제7조, 제17조제2항제2호	150 (70)	300 (150)	600 (300)
라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규정된 자와 그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8조, 제17조제2항제3호	150	300	700
마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11조제3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11조제4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법 제11조제5호, 제17조제2항제4호	150 (70)	300 (150)	600 (300)

구분	부 과 대 상	근거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아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자	법 제12조제1호, 제17조제1항제2호	300 (150)	600 (300)	1,400 (700)
자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자	법 제12조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200 (100)	500 (250)	1,000 (500)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한 자	법 제12조제3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자	법 제12조제4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	법 제12조제5호, 제17조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파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법 제13조, 제17조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첨부 4)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최초 시행 2007.6.30, 개정 시행 2009.4.22] -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부 칙 <제8322호, 2007.3.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 칙 <제9344호, 2009.1.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8호, '07.6.30,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끝.